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연락 담당자 :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2-2670-9500)
제 목 :	[성명서] 9일간의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며 : 노동법개악과 탄력근로제확대 저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전송일자 :	2019. 3. 7.(목)
전송매수 :	총 7매(농성일지, 사진 포함)

[성명서]

9일간의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며 : 노동법개악과 탄력근로제확대 저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 해단식
-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7일 14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노동법률단체의 단식농성에 보여주신 관심과 보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오늘 지난 2월 27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앞에서 진행해온 집단 단식농성을 마무리합니다. 저희는 단식농성에서 1) 노동법 개악 저지, 2)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3)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를 주장했습니다. 3월 5일 청와대 앞 긴급선언 기자회견에는 역대 최대인 90명의 노동법률가들이 모였고, 역대 최대인 278명의 노동법률가들이 긴급선언문에 연서명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단식농성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소중한 성과와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가 3월 7일 본위원회 개최 이전 할 예정이었던 노동법 개악안의 밀실야합을 저지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국노총이 일부 수용하려고 한 사용자측 의제들인 ①대체근로 전면허용, ②사업장내 징의행위 금지, ③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④징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 ⑤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은 모두 헌법상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개악안이었습니다. 노동법률가들은 경사노위가 박근혜-최순실 정부와 재벌총수들이 밀실에서 거래했던 민원사항을 버젓이 논의하고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려는 밀실야합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감시해나갈 것입니다.

둘째, 탄력근로제 확대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을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알리고 문제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경사노위 첫 성과라고 홍보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은 경사노위법에 정해진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단지 5명이 모여 만든 밀실야합의 결과였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1년에 6개월 연속으로 주 64시간 일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사용자들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무줄 노동시간, 공짜 야근을 일상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동법률가들은 장시간노동을 합법화하고 과로사를 조장하여 노동자들의 삶-시간-건강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를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밀실야합의 결과물인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문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도 안됩니다.

셋째,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개선 논의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경사노위는 ILO핵심협약 비준에 반대하는 사용자측과 타협을 한다는 논리로 노동기본권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신속히 아무런 조건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합니다. 나아가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사용자측 의제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설립 신고제도 폐지, 정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금지, 손배/가압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넷째, 많은 노동·인권·시민단체들이 노동법률가들의 집단단식 농성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고, 국제노총(ITUC)을 비롯한 국제노동·시민단체에서도 지지와 연대를 표시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노동·인권·시민단체들과 연대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저지, 노동법 개악 시도 저지,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등의 목소리를 더욱 확산시킬 것입니다. 또한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의 수많은 권고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단식농성 과정에서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청년, 이주, 미조직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법률가들은 노동법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의 국면에서 비정규직, 청년, 이주, 미조직 노동자들이 기자회견, 성명서, 집회 등을 통해 낸 요구와 목소리를 통해 지금 한국사회에서 시급히 필요한 법제도 개선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단식농성은 끝났지만, 단식농성을 통해 환기하려고 했던 문제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당장 정부는 밀실야합의 결과물인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에 그대로 넘겨 입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큼니다. 사용자들에게 선물을 주어야 ILO핵심협약 비준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문제설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노동

기본권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노동법 개악을 시도할 가능성도 큼니다. 노동법률단체는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형식화/도구화하면서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노동자들의 삶-시간-건강을 파괴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시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토론회 개최, 국회 정당들과의 소통, 1인 시위 및 선전홍보활동, 노동·인권·시민 단체들과의 연대, 국제노동계 및 노동법률가 등 국제사회의 지지 여론환경 조성 등의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집단 단식농성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 3. 7.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첨부자료 : 단식농성 일지, 사진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 일지(20190227~0307)

1. 단식농성의 배경 및 경위

- 7. 2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노개위’) 출범. 최우선 과제로 ‘ILO 핵심협약 비준에 필요한 법제도 점검’ 사항을 다루기로 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반대하는 사용자측과의 타협을 위한다는 이유로 사용자측 의제에 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함.
- 11. 5.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하기로 합의
- 11. 14. 노동법률단체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1인 시위 시작
(~2.26.까지 66일간 진행)
- 11. 20. 노개위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 개선에 관한 공익위원 의견(공익위원 3차 합의안) 발표. 공익위원안은 여전히 ILO 국제기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용자측이 요구하는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2019년 1월 말까지 논의하여 일괄합의하기로 함.
- 11. 30. 경총 경사노위에 입법요구안 제출
- 12. 28. 민주당 한정애 의원 노조법 개정안 대표발의(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미달하는 3차 공익위원안보다 더욱 후퇴한 내용으로, 현재 노조법보다 단결권을 더욱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됨)

- 1. 15.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촉구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국회)
- 1. 21.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노조법 개정안 문제점에 대한 공개질의
- 1. 25.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들이 경사노위 개정 공익위원안 마련을 위한 초안 제출(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②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조항 삭제 ③ 유니언숍 허용 조항 삭제 ④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 ⑤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⑥ 사업장 내 쟁의

행위 금지 ⑦ 파업 찬반투표 유효기간을 60일로 설정 등)

- 2.19. 경사노위, 5인 밀실합의를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으로 발표.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 등.
- 2.22. 노개위 회의 종료. 탄력근로제 합의와 마찬가지로 3월 7일 본위원회 전까지 노동법 개악안에 관한 밀실 합의 시도 예상됨
- 2.25. 노동법률단체 1차 기자회견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규탄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경사노위 앞)
- 2.27. 노동법률단체 2차 기자회견 - ‘노동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 기자회견’(경사노위 앞)
- 2. 27. 집단 단식농성 돌입(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계속단식 + 1일 동조 단식)
- 2. 28. ‘경사노위 야합을 해부하는 밤’문화제(경사노위 앞)
- 3. 3. 매일노동뉴스 인터뷰(단식 5일차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ILO핵심협약 비준에 어떤 것도 끼워팔기 할 수 없다")
- 3. 4. 매일노동뉴스 기고(권영국, 노동법률가들이 단식하는 이유)
- 3. 5. 노동법률단체 3차 기자회견(“노동변호사 1세대 문제인 대통령 만남 시다 :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역대 최대의 인원인 90명의 노동법률가(노무사·변호사·법학자)들이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참석. 역대 최대인 278명의 노동법률가들이 긴급선언문에 연서명.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선언문’,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문 철회 요청서’,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 관련 의견서’ 전달
- 3. 6. 매일노동뉴스 기고(송영섭, 노동적폐의 유령 사용자 주장의 허구성) 성명서 발표(노동법률단체는 경사노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의 3월 7일 경사노위 본회의 참여에 반대한다)
- 3. 7. 매일노동뉴스 기고(윤애립, ILO 협약 비준 위해 노동기본권 후퇴시

키웠다는 기만)

단식농성 마무리 : 노동개약과 탄력근로제 저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 노동·인권·시민단체들의 지지 및 연대활동

이주공동행동, 알바노조,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직장갑질119,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KBS본부, 서울시 투자기관 노동조합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 단병호(전 민주노총 위원장), 故김용균님 어머니 김미숙,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김경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조돈문(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노중기(한신대 교수), 허영구(평등노동자회 대표)님 등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단식농성장을 방문하여 탄력근로제 확대의 의미, 노동법개약안의 내용 및 파장,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문제점 등에 대한 관심과 단식농성에 대한 연대를 표현함.

□ 3. 5. 13시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기자회견(“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개약, 노조파괴기본법 만든다고? 경사노위 해체하라”)

□ 3 .6. 11시 알바노조·라이더유니온·평등노동자회·청년정치공동체 너머 기자회견(“경사노위는 노조법개약 그만두고 최악의 양극화 초래한 소득격차에 집중하라”)

3.6. 11시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노동법 개약 반대 이주노동단체 기자회견,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참여해주시고 지지와 연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